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나539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0 선고 2024나5392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3. 23 선고 2010가소2096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7. 19.

판결선고 2024. 9.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3. 23. 선고 2010가소2096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2000.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1. 2. 25.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광명시법원 2000가소10940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1. 1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2000.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1차 선행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선행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행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209623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3.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2000. 10. 10.까지는 연 5%의, 2000. 10. 11.부터 2011. 2. 25.까지는 연 25%의,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2차 선행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선행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2000. 10. 10.까지는 연 5%의, 2000. 10. 11.부터 2011. 2. 25.까지는 연 25%의, 2011.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송승훈, 판사 이종채

1)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판결正本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24. 3. 5.경 제1심판결의 판결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알았고 그 이후 추완항소 기간 내인 2024. 3.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